

의안번호	2206935
의 퇴 인	용혜인 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계번호	24F631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－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2조의5 신설 (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)	○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협동조합, 협동조합 연합회,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말함 - 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
2	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(기업합병·분할 등에 대한 감면)	○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0조의2제1항 또는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협동조합등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법인설립등기와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협동조합·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5 신설 (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7조의2제11항 신설 (기업합병·분할 등에 대한 감면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조직변경 등에 의한 취득 재산의 취득세 및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수 감소 예상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한 부동산 건수 및 가액과 조직변경한 협동조합 등의 취득재산 등의 현황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 2022년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9,649개(82.2%), 사회적협동조합은 4,116개(17.2%), 연합회는 127개(0.5%)로 나타나고 있음

[표 1] 2022년 기준 협동조합 설립 현황

구분	계	일반협동조합	사회적협동조합	일반협동조합연합회	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조합수(개)	23,892	19,649	4,116	93	34
비중(%)	100.0	88.2	17.2	0.4	0.1

자료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4. 5. 17. 「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」)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